2019. 11. 07.(목)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세미나실>

-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제17대 대의원 -

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

< 임시대의원회 개요>

○ 목 적 : 노사협의위원, 단체교섭위원 승인 및 단체교섭안건 논의

(대의원 및 상무집행위원 합동워크숍 기간내 개최)

○ **일 시 :** 2019. 11. 7.(목) 15:00

○ **장 소 :** 전북 부안군 변산면 ※ 모항해나루가족호텔 세미나실



- 대전도시공사 노동조합 **제17대** 대의원 -

임시대의원회 회의자료

Ⅰ. 제17대 대의원회 구성현황

① 활동근거

- O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 규약 제2절(대의원회) 제17,18조
- 대의원회 당선 공고('19.1.29.) / 조합규약 제18조 의거 ※조직개편・인사이동・자진사퇴 등의 이후로 인한 추가・보궐선거 별도공고

② 대의원회 구성개요

- 활동기간: '19.01.29. ~ '20.01.28. ※제18대대의원 선출공고시까지
- O 활동범위: 조합규약 제20조(대의원회의 기능)
 - ※ 제15조 제2항(해산, 위원장 · 임원 선출 등)을 제외한 총회의 기능
- O 대의원구성

소속(배정인원)	이 름	비고	소속 (배정인원)	이 름	비고
여성대의원 (1)	이 화 영	-	대전오월드 (4)	맹 재 영	-
혁신기획실 (1)	정 대 영	-		박 중 상	-
경영지원처 (1)	홍 의 준	-	환경사업처 (7)	이 정 현	-
고객지원처 (1)	백 민 호	-		강 준 원	-
도시개발처 (2)	박 창 희	-		채 양 기	-
	홍 정 우	-		곽 원 균	-
건설사업처 (1)	김 종 태	-		윤 종 대	-
대전오월드 (4)	허 현	-		신 인 수	-
	김 용 선	-		김 숙 자	-
합 계				18 명	

※ 소속별 배정인원은 향후 규정개정 및 조직개편을 통해 조정·변경 될 수 있음

Ⅱ. 임시대의원대회 안건

□ 노사협의위원 승인의 건

[노사협의회 활동 관련 내부규정]

-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규약 제10장(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52조(노사협의위원)
- 대전도시공사 사무노사협의회 운영규정

O 노사협의위원 구성

- 의 장: 노측대표(위원장) 및 사측대표(사장) 공동의장

- 간 사 : 위원중에서 각 1인씩 선정

- 위원구성 : 6인 (사측 6인)

[당연직] 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위촉직] 위촉위원 (위원장 추천▷대의원회 승인)

O 위원의 임기: 3년

O 노사협의위원 추천명단

구	분	노동조합 위원	사용자 위원	비고
의	장	위원장 조 성 민	유 영 균	-
위 :		부위원장 양 영 재	최 규 관	-
	원	부위원장 장 수 련	백 명 흠	-
	펀	사무국장 백 승 권	김 동 원	-
		대의원 채 양 기	김 홍 준	-
간	사	대의원 김 용 선	한 상 헌	-

※ 노사협의회 개최시기 도래로 인해 제8대 노동조합 집행부 추천 위촉위원 2인이 포함된 노사협의위원으로 2019년도 3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② 단체교섭위원 승인의 건

[단체교섭 추진 관련 내부규정]

- 대전도시공사노동조합규약 제10장(단체교섭 및 노사협의) 제48~51조

O 단체교섭위원 구성

- 노측대표 : 노조위원장

- 위원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3~7인

[당연직] 위원장

[위촉직] 위촉위원 (위원장 위촉▷대의원회 승인)

O 위원의 임기: 당해 단체교섭 체결시까지

O 2019년도 단체교섭위원 추천명단

구 분	교섭위원 명단	비고
대표 교섭위원	위원장 조 성 민	-
	부위원장 양 영 재	-
교섭위원	부위원장 장 수 련	-
#입기전 	사무국장 백 승 권	-
	대의원 채 양 기	-
간 사	대의원 김 용 선	-

※ 노사협의위원과 중복운영으로 사측과의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교섭권 향상에 기여

③ 2019년도 단체교섭 안건 협의 건

O 단체교섭 안건 목록

연번	안 건 개 요	비고
1	임금피크제 폐지	공약사항
2	보직인사에 조합원 평가 반영	공약사항
3	각 종 휴직, 교육 등 업무 열외자 대체인력 충원	공약사항
4	승진명부 통보 등 투명한 인사제도로 개선	공약사항
5	희망부서제 및 순환근무제 시행	공약사항
6	업무상 과실에 따른 범칙금 등 공사에서 부담	공약사항
7	업무 대행수당 인상	공약사항
8	해외연수 지원금액 인상 및 참여기회 확대	공약사항
9	장기교육기회 확대	공약사항
10	유니온숍 부활	'17년 폐지조항
11	노동조합 운영차량 지원	첨부1 관련자료
12	탄력적 근로시간제 유형변경 (2주▷3개월)	삭제 (관련부서 자체협의)

[※] 단체교섭안건은 본 임시대의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고, 수정하여 최종 확정코자 함.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운영비 원 조 금지하는 노조법 81조 4호는 위헌" 헌법불합치 선언 : 2012 헌바90

labor case



사용자가 노동조합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금지하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 81조 4호 중 일부 내용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 5월 31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조항의 효력은 20 19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2012헌바90)

헌법불합치 선언은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만, 위헌 선언으로 당장 법률이 폐지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당분간 그 법률의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이다.

해당 법률은 국회가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지 않으면 효력을 자동으로 상실한다.

A산별노조는 2010년 6월 18일부터 30일까지 회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단체협약에는 조합사무실과 집기, 비품을 제공하며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유지비 일체도 회사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있었다. 그 외에도 노조에 차량과 주유비를 제공하는 등 '시설, 편의 제공조항'이 포함됐다.

이에 OO지방 고용노동청 OO지청장은 이 '시설, 편의제공 조항'이 노조법 제81조 제4호를 위반했다며 2010년 11월 법위반을 이유로 A노조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A노조는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시정명령의 근거가 된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신청했다. 이 신청이 기각되자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

우리 노조법 제81조 4호는 회사가 노조에 지배.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예로 "노조 운영비원조"를 들고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이 전까지 우리 대법원은 최근 현대자동차 사건이나 두원정공 사건에서 회사가 노조와 맺은 단체협약에 근거해 노조에 업무용 차량이나 노조 간부용 아파트를 제공한 것도 전부 부당노동행위며, 이를 시정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이 적법하다고 봤다.

그런 가운데 이번 헌법재판소 판단은 노조 운영비 원조는 노사관계 사적자치에 맡겨야 하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려 눈길을 끈다.

■현재 "노조 자주성 저해 위험 없는데도 운영비 원조 금지는 헌법에 위반"

헌법재판소는 "운영비 원조 행위가 노조 자주성을 저해할 위험이 없는데도 금지하는 것은 노조법의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운영비 원조 금지는 실질적으로 노조의 자주성이 저해되었거나 저해될 위험이 현저한 경우에 한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일체의 운영비 원조행위를 금지하는 방식은 노조의 단체교섭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오히려 노사가 자율적으로 단체교섭에 맡길 사항까지 국가가 개입해 노조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 운영 경비 마련은 노조가 스스로 결정할 문제며, 노사가 자율적으로 협의하는 것이 근로3권을 보장한 취지에 가장 부합한다"며 "그런 면에서 운영비 원조 금지 조항은 노조 자주성과 단체협약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복수노조 중 일부 노조에게만 특별히 원조를 해서 사용자가 차별행위를 할 위험도 있지만, 이는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나 지배개입 금지 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봤다.